

## WTO, EU의 지리적표시제 지지

WTO 패널은 2005년 3월 15일 출판한 보고서에서 농산물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에 관한 보호 체계가 WTO 규정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한 지리적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는 농산물(예를 들어, Roquefort나 Prosciutto di Parma<sup>1)</sup>)을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WTO는 미국과 호주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러한 명칭을 보호하는 유럽의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점이 없고,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도 합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리적표시제가 기존의 상호(trademarks)와 함께 사용(coexist)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WTO의 결정에 대해 EU 농업 및 농촌개발 집행위원인 Mariann Fischer Boel은 “WTO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다른 WTO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농산물 품질보호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과 호주는 WTO 패널에 와인과 주정(spirits)을 제외한 농산물 및 식품에 지리적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designations of origin)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WTO 패널은 EU 시스

---

1) Roquefort는 프랑스의 블루치즈이고, Prosciutto di Parma는 이탈리아산 치즈 중 하나이다.

템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양국이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을 기각했다.

지리적표시제 보호는 EU 식품정책의 통합적인 부분이고, EU는 이러한 보호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정책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제고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농촌공동체와 특화된 농산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WTO 패널의 결정으로 EU는 명칭의 불법적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지리적표시제와 상호 간의 문제에 대해서 WTO 패널은 EU 시스템의 조항이 지적재산권 협약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더해 EU는 “EU의 시스템은 제3세계의 지리적 지역과 관련된 지리적표시제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는 혐의를 풀고자 노력했다. 사실 EU 시스템은 제3세계에서 신청하는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허용하고 있다. WTO 패널은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3세계의 생산자 단체들이 자국의 정부를 거치지 않고도 유럽연합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EU에 요청했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한 지역, 원산지과 그 지역에서 나는 상품의 고유한 품질, 명성, 기타 특질 간에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 준다. 현재 EU에는 약 700여 가지의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어 있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